

이미지 넷째

혼외자(婚外子)의 호적창설의 건

출생자 : 유(柳)00 1995년 00월 00일생

출생지 : 서울특별시 00구 0000동 00 아파트 0동 000 호

신고인 : 부 000

주 소 : 서울특별시 00구 0000동 00-0 0층 000호

냉 용 : 42세의 총각으로 6년전 친지의 모친 회갑잔치에 가서 우연히 알게된 여인과 동침한
게 임신이되어 분만후 전화연락만 해놓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.

그래서 신고인 총각은 모친에게 이사실을 고하니까 네 손자인데 데려다 키우겠다고
하여 할머니가 키우고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학교 입학할 나이가되어서 학교를 보
내야겠는데 호적이 없으니 학교를 보낼수도 없고 해서 다병면 으로 알아보았으나
호적입적할 방 법이없다고 고민하던중에 박갑수 행정사에 와서 상담하였습니다.

처리내용 : 유부녀와 총각이 정을통하여 생긴 아이는 현행법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는데 구청
호적계에 문의 하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인후보증 2명만 세워갖이고 서
류첨부하여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라고 해서 2001년 12월 12일 그렇게 처리를 하
였습니다.